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홍보영상기획·제작, 6급 상당 -

충청북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홍보영상기획·제작, 6급 상당)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예정 인 원	담당 예정업무	근무예정 기관
홍보 영상 기획 제작	교육행정 6급 (일반임기제)	1명	○ 홍보영상콘텐츠 기획·제작 - 유튜브 영상 직접 기획·출연·촬영·편집 관리 - 유튜브 에듀PLAY·캠페인 영상 제작 관리 - 교육감님 인사말씀 기획·촬영·편집 관리 ○ 영상 관련 SNS 채널(유튜브 등) 관리 ○ 스튜디오 운영 지원(온라인 생중계, 시설장비 관리) ○ 교육청 행사 영상(사진) 촬영 지원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한 업무	충청북도 교육청 (공보관)

※ 참고사항

- 근무기관(부서)는 조직 개편 등 인사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임용기간

○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2027. 1월 임용예정)

- 임용일은 임용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실적 평가 후 필요 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4.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결격 사유 등)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삭제
 - 바. 삭제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인 자(2008.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거주지 제한: 없음

라. 응시자격 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홍보영상 기획·제작 (일반임기제 6급 상당)	○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u>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u>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u>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언론사, 민간기업, 법인 및 단체 등(사업자등록된 곳에 한함)에서 온라인 생중계 및 영상 콘텐츠 제작(기획, 촬영, 편집)으로 근무한 경력(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모든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경력과 관련된 활동내용, 프로젝트 성과 등에 대한 포트폴리오 제출 ※ 전문성 검증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획하여 제작한 3분 이내의 홍보영상 (주제: 충북교육)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관련 분야 실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 기준(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관련 분야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경력증명서 상 근무처, 근무기간(시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비상근)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발급기관 직인 날인(시간제 근무경력 1일 8시간,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마. 우대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홍보영상 기획·제작 (일반임기제 6급 상당)	1. 영상제작 관련 학사 학위 이상 보유 - 관련학위: 방송영상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미디어콘텐츠학과 등 영상제작 관련 학과 - 단, 응시요건으로 활용된 학위는 우대요건으로 불인정 2. 3등 이내 직무분야 관련 공모전 당선 실적 - 단, 개인명의(단체수상 제외)의 방송·언론사, 수여기관이 정부·공공기관인 수상기록만 인정 3.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한국영상전문인(촬영·편집), ACA(프리미어), ACA(애프터이펙트), ACP(프리미어), ACP(애프터이펙트), 사진기능사 ※ 해당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5. 보수 수준

○ 채용예정직급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임용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홍보영상기획·제작	일반임기제 (교육행정 6급 상당)	86,606	57,708

- ※ 최종합격자 임용약정 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연봉한계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한계액 적용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일반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자격증, 관련분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서류전형 합격자는 전문성 검증을 위해 역량평가 자료 제출: 본인이 제작한 3분 이내의 홍보영상(주제: 충북교육) USB 제출(MP4 파일)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불량”으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불량”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7.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16.(금) ~ 2026. 10. 28.(수),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에 게시

나. 접수기간: 2026. 10. 26.(월) ~ 2026. 10. 28.(수) 근무시간 내(09:00~18:00)

※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하지 않음

다. 접수장소: 충청북도교육청 본관 3층 총무과(인사팀)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가능, 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반드시 익일특급으로 발송)하고, 접수 누락 예방을 위해 발송 후 ☎043)290-2515로 유선 연락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주소: (2863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산남동 4-11)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채용담당자 <봉투에 “임기제공무원 채용서류 재증” 명기>

※ 등기우편 응시자의 응시번호는 유선 또는 SMS로 개별통보

8. 시험 일정

시행계획 공고	원서접수 및 교부	1차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서류합격자 영상제출	2차시험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예정일
2026. 10. 16.(금)	2026. 10. 26.(월) ~ 10. 28.(수)	2026. 11. 13.(금)	2026. 11. 19.(목)	2026. 11. 23.(월)	2026. 12. 1.(화)

※ 상기 시험일정은 서류검증,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면접일시 및 장소는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는 본인이 제작한 3분 이내의 홍보영상(주제: 충북교육) 제출
(별도 USB 제출 또는 E-mail 제출)
- USB 제출 시 제출일[2026. 11. 19.(목)]까지 도착해야 하며 제출한 USB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생에게 반환함
 - E-mail 제출 시 제출일[2026. 11. 19.(목)]까지 도착해야 함
 - E-mail 제출 주소: reinforce@korea.kr
- ※ 합격자 발표방법: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cbe.go.kr)에 공고
-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채용/시험 ⇨ 임용정보 ⇨ 일반직임용시험
- ※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하지 않음

9.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자필 작성 후 제출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증빙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공무원인 경우 이력서와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제출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업무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	필수
5.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자체서식)	○ 근무기간, 부서,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 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주의사항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발행처의 관인(직인) 날인, 발급확인자 성명·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경력증명서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고용업체와 근무기관이 다른 경우 고용업체의 경력증명서 외에 근무기관의 근무사실확인서 추가 제출(발급기관의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별표 제6호 서식 사용)	필수

구 분	내 용	비 고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업무 인지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 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함. ○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시간제 근무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 인정하며,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회사가 폐업한 경우 다음 ㉡~㉤ 모두 제출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소득금액증명서 ㉤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 카드, 업무분장 등)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을 설정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 검증에 사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 출력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경력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필수
7. 관련 자격증 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가능 ※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 시 원본 지참	해당자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 를 포함하여 제출	필수
9.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필수
10.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필수
11.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서명필수) 1부	필수
12. 위임장 1부	○ 응시원서 및 서류제출 위임장(서명필수) 1부	해당자

구 분	내 용	비고
(별지 제11호 서식)		
13. 포트폴리오	○ A4용지 단면 10매 이내(표지 제외)로 작성 - 개인정보(성명, 출신학교명, 출생지 등)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 제출된 포트폴리오는 응시자의 실무능력을 판별하기 위해 제출받은 것으로 면접 시 활용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는 본인이 직접 기획·제작한 3분 이내의 홍보영상(주제: 충북교육) 제출 (별도 USB 제출 또는 E-mail 제출)	필수
14. 응시수수료	○ 충청북도교육청 세입계좌로 사전에 응시자 이름으로 입금하고 입금영수증을 원서접수 시 제출 ※ 응시수수료(6급): 7,000원 ※ 계좌번호: 농협 338-01-009101 (예금주: 충청북도교육청) ※ 응시수수료 납부기간: 서류접수 마감일 18:00까지 (기한 내 미납 시 원서접수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필수
15. 기타사항	모든 서류는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필수

※ 주의사항

- 모든 증명서(확인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자격증,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가.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 가능합니다.
-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기재사항의 거짓 작성, 착오, 누락, 연락 불능 및 응시자 주의(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같음합니다.
- 사. 원서접수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 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아.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라 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조사(조회) 및 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차. 이 시행계획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cbe.go.kr)의 『채용/시험』 메뉴에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3-290-2515)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홍보영상기획·제작	일반임기제 6급 상당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주요업무	○ 홍보영상콘텐츠 기획·제작 - 유튜브 영상 직접 기획·출연·촬영·편집 관리 - 유튜브 에듀PLAY·캠페인 영상 제작 관리 - 교육감님 인사말씀 기획·촬영·편집 관리 ○ 영상 관련 SNS 채널(유튜브 등) 관리 ○ 스튜디오 운영 지원(온라인 생중계, 시설장비 관리) ○ 교육청 행사 영상(사진) 촬영 지원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한 업무
-------------	--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지식	○ 홍보 영상 기획·제작 관련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	------------------------------

관련분야: 홍보영상기획·제작					
응시 자 격 요 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15%;">공통</td><td>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2008.12.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무 분야</td><td> ○ [자격요건]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언론사, 민간기업, 법인 및 단체 등(사업자등록된 곳에 한함)에서 온라인 생중계 및 영상 콘텐츠 제작(기획, 촬영, 편집)으로 근무한 경력(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우대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1. 영상제작 관련 학사 학위 이상 보유 - 관련학위: 방송영상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미디어콘텐츠학과 등 영상제작 관련 학과 - 단, 응시요건으로 활용된 학위는 우대요건으로 불인정 2. 3등 이내 직무분야 관련 공모전 당선 실적 - 단, 개인명(단체수상 제외)의 방송·언론사, 수여기관이 정부·공공기관인 수상기록만 인정 3.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한국영상전문인(촬영·편집), ACA(프리미어), ACA(애프터이펙트), ACP(프리미어), ACP(애프터이펙트), 사진기능사 ※ 해당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td></tr> </table>	공통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2008.12.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직무 분야	○ [자격요건]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언론사, 민간기업, 법인 및 단체 등(사업자등록된 곳에 한함)에서 온라인 생중계 및 영상 콘텐츠 제작(기획, 촬영, 편집)으로 근무한 경력(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우대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1. 영상제작 관련 학사 학위 이상 보유 - 관련학위: 방송영상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미디어콘텐츠학과 등 영상제작 관련 학과 - 단, 응시요건으로 활용된 학위는 우대요건으로 불인정 2. 3등 이내 직무분야 관련 공모전 당선 실적 - 단, 개인명(단체수상 제외)의 방송·언론사, 수여기관이 정부·공공기관인 수상기록만 인정 3.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한국영상전문인(촬영·편집), ACA(프리미어), ACA(애프터이펙트), ACP(프리미어), ACP(애프터이펙트), 사진기능사 ※ 해당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공통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2008.12.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직무 분야	○ [자격요건]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언론사, 민간기업, 법인 및 단체 등(사업자등록된 곳에 한함)에서 온라인 생중계 및 영상 콘텐츠 제작(기획, 촬영, 편집)으로 근무한 경력(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우대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1. 영상제작 관련 학사 학위 이상 보유 - 관련학위: 방송영상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미디어콘텐츠학과 등 영상제작 관련 학과 - 단, 응시요건으로 활용된 학위는 우대요건으로 불인정 2. 3등 이내 직무분야 관련 공모전 당선 실적 - 단, 개인명(단체수상 제외)의 방송·언론사, 수여기관이 정부·공공기관인 수상기록만 인정 3.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한국영상전문인(촬영·편집), ACA(프리미어), ACA(애프터이펙트), ACP(프리미어), ACP(애프터이펙트), 사진기능사 ※ 해당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편철)

- | | |
|-----------------------------------|--|
| 1. 응시원서 | ☐ 제출 ☐ 미제출 |
| 2. 이력서 | ☐ 제출 ☐ 미제출 |
| 3. 자기소개서 | ☐ 제출 ☐ 미제출 |
| 4. 직무수행계획서 | ☐ 제출 ☐ 미제출 |
| 5. 경력증명서 | ☐ 제출 ☐ 미제출 |
| 6.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제출 ☐ 미제출 |
| 7. 자격증명서 | ☐ 제출 ☐ 미제출 |
|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 | ☐ 제출 ☐ 미제출 |
| 9. 주민등록초본 | ☐ 제출 ☐ 미제출 |
|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제출 ☐ 미제출 |
| 11.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 ☐ 제출 ☐ 미제출 |
| 12. 위임장(해당자) | ☐ 제출 ☐ 미제출 |
| 13. 포트폴리오 | ☐ 제출 ☐ 미제출 |
| 14. 응시수수료 입금 영수증 | ☐ 제출 ☐ 미제출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 시 원 서

본인은 충청북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충청북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인)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직접 작성합니다.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 및 분야를 기재함
- 일반임기제 6급(홍보영상기획·제작)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6. 응시수수료: 6급 상당 7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 공통사항

※ 응시번호		응시 분야		성명	
--------	--	----------	--	----	--

☐ 응시자격

○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예시] 0000산업기사		

○ 근무경력

* 반드시 작성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		
	~		

○ 학위 요건

* 해당자는 반드시 작성하되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최종학력	학사 이상 학위 취득시 기재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자 기 소 개 서

※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 명	서 명 (자필)
기재하지않음				

[작성 용지 및 기준]

- 작성용지: A4 단면인쇄
- 분량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자체: 주된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하되 다른 글자체를 일부 혼용 가능
- 글씨크기 13~15(일부필요부분 크기조정 가능), 줄간격 150~170mm, 용지 여백은 위쪽 20mm, 아래쪽 10mm, 머리말, 꼬리말은 각 10mm 작성(기타 문단 위 간격 등은 지정하지 않음)

[작성 내용]

- 자유롭게 기술

[유의사항]

- 작성 시 성명, 출신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 명	서 명 (자필)
기재하지않음				

[작성 용지 및 기준]

- 작성용지: A4 단면인쇄
- 분량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자체: 주된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하되 다른 글자체를 일부 혼용 가능
- 글씨크기 13~15(일부필요부분 크기조정 가능), 줄간격 150~170mm, 용지 여백은 위쪽 20mm, 아래쪽 10mm, 머리말, 꼬리말은 각 10mm 작성(기타 문단 위 간격 등은 지정하지 않음)

[작성 내용]

-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

[유의사항]

- 작성 시 성명, 출신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경력사실증명서

※ 발급기관의 고유서식으로는 담당업무(직무) 등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사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경 력 사 실 증 명 서	재 직 기 간	부서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상근/비상근 (주 근무시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연락처	
				성 명	인
○ ○ 기 관 장 (직인)					
작성요령 ※ 상근이란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이상 정규 근무한 형태를 말함(이외 시간제 근무자 등은 비상근) - 비상근의 경우 주 근무시간을 기재(예: 주 35시간) ※ 위 증명서를 허위 등으로 발급할 경우 합격 취소 및 고발 등 행정처분 될 수 있음					

근무사실확인서

※ 고용업체와 근무기관이 다를 경우 근무기관의 근무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경 력 사 항	재 직 기 간	부서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상근/비상근 (주 근무시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연락처	
				성 명	인
○ ○ 기 관 장 (직인)					
작성요령 ※ 상근이란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이상 정규 근무한 형태를 말함(이외 시간제 근무자 등은 비상근) - 비상근의 경우 주 근무시간을 기재(예: 주 35시간) ※ 위 증명서를 허위 등으로 발급할 경우 합격 취소 및 고발 등 행정처분 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총 2쪽)

우리 기관에서는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이용기간	수집 근거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관리, 경력·자격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증, 경력, 학력, 병역사항, 4대보험 자격 득실, 우대요건에 관한 사항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7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이용기간	수집 근거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관리	주민등록번호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7조

※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3. 복수국적자, 경력·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제공 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 청(사무소)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응시원서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하는 정보	제공 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분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 채용 분야: 홍보영상기획·제작

구분	임용자격 요건	해당란에 체크(○)
자격요건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u> 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u> 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u> 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언론사, 민간기업, 법인 및 단체 등(사업자등록된 곳에 한함)에서 온라인 생중계 및 영상 콘텐츠 제작(기획, 촬영, 편집)으로 근무한 경력(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우대요건	영상제작 관련 학사 학위 이상 보유 - 관련학위: 방송영상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미디어콘텐츠학과 등 영상제작 관련 학과	
	3등 이내 직무분야 관련 공모전 당선 실적 - 개인명의(단체수상 제외)의 방송·언론사, 수여기관이 정부·공공기관인 수상 기록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한국영상전문인(촬영·편집), ACA(프리미어), ACA(애프터이펙트), ACP(프리미어), ACP(애프터이펙트), 사진기능사	

2026년 월 일

응시자 성명 : (서명)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